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, 유·초·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**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**합니다.
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 **본 지침은 2022.9.26.부터 적용**되며,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

(제7판)

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·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9. 26.

교 육 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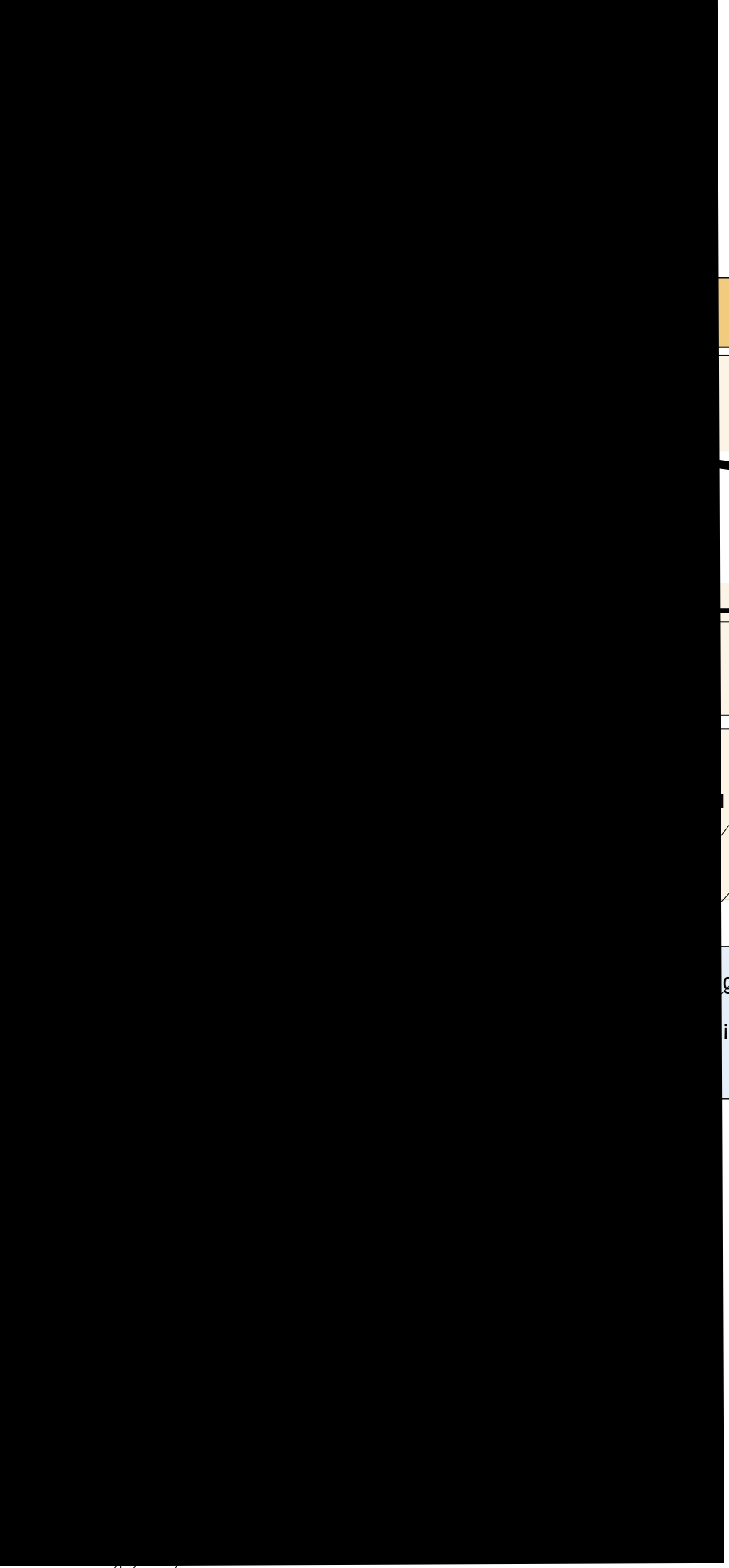

Ⅰ 대응 기본방향

1 기본원칙

□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**대학이 지켜야 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**

○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 기준으로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, 그 간의 축적된 **방역 관리역량, 지역 여건 등을 고려**하여 **대학의 자율성 강화**

□ **대면수업·활동 진행 시, 등교(출근) 전 임상증상을 확인**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(출근)하지 않도록 하여 **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방지**

□ 학생 및 교직원 대상 **감염병 예방교육 실시,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, 환경 위생관리**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

○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, **'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'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** 방역수칙 **홍보 및 안내**

《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(권고)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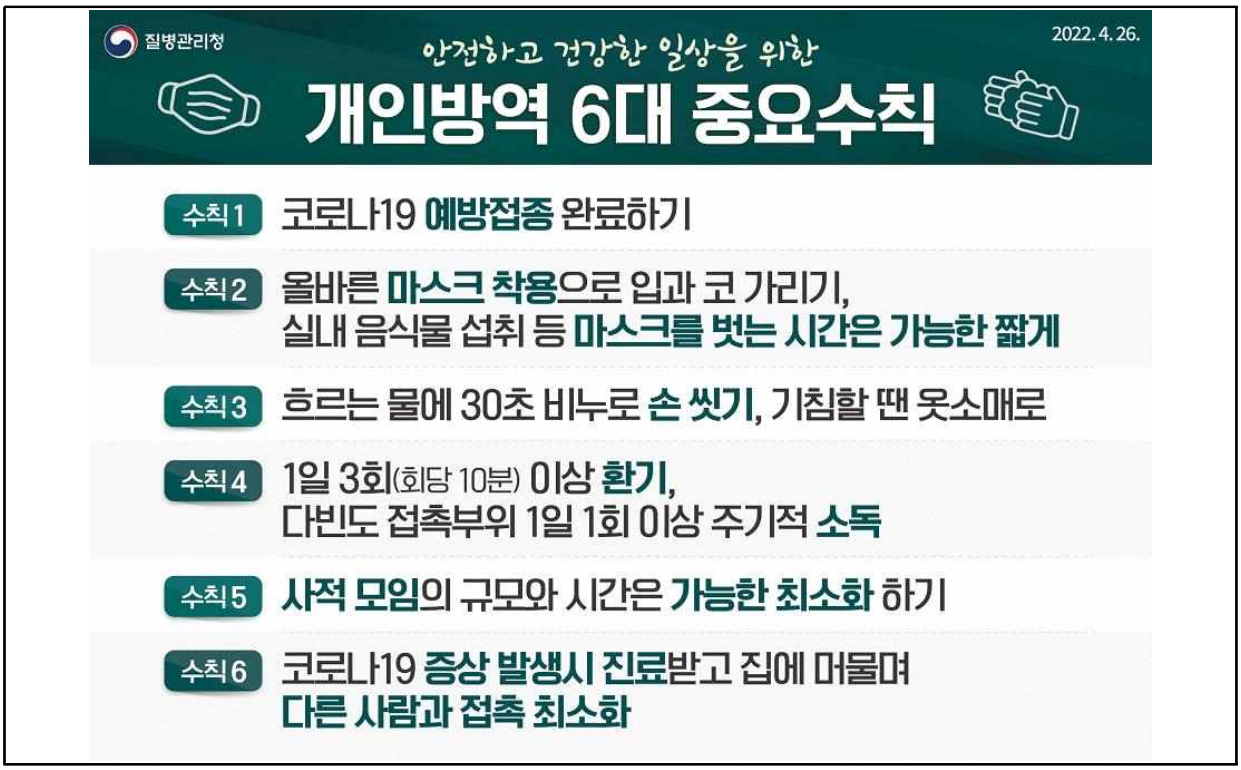

2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

□ **(학내 관리체계)**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*을 담은 **대응계획**(학생 심리지원 포함)을 **수립·시행**하여 **대학별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**

*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

○ 대응계획에 따라 **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**(이하 담당자)를 지정하고, **'대학 일상회복지원단'을 구성**하여 **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**

< (참고)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>

▸ **(구성)**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(총장 또는 부총장 등), 실무담당자, 학생(반드시 포함) 등

▸ **(기능)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**에 대한 **대학 방역관리, '22년 2학기**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**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**

- **변경된 방역 수칙**과 **기초 방역수칙**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**홍보 및 교육**하여 **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**

○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**업무연속성 계획(BCP)**을 **주기적으로 현행화***하여 **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**

*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을 포함하며, 학기별 업무분장 변동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

※「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」(교육부, '22.2.10.) 참고

□ **(학외 협조체계)** 교육부 및 유관기관(관내 보건소, 지정의료기관 등) 연락처를 파악하여 **비상연락체계를 유지**하고 **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**

○ **(마음건강)**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(학생상담센터 등)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**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·정서 지원**

- **타 대학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*** 등을 도입하거나 각 대학 여건에 맞게 **일부 변경하여 활용토록 권장**

* 202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사례집 배포('22.1.) 및 성과포럼 개최('22.2.), 대학혁신 및 학생도약 포럼 개최('22.8.)

Ⅱ 대학 환경 · 시설 관리

1 학내 환경 관리(공통)

□ **(소독)** 공용공간, 통학버스,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**일상 소독 강화**

○ 주기적 일상 소독, **다빈도 접촉부위**(손잡이, 각종 버튼 등) **1일 1회 이상 소독**

□ **(환기)**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,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**충분한 환기 실시**

○ **냉·난방기(공기청정기 포함)** 사용 시, **수시로 환기** 실시

※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

□ **(방역물품)** 대학 내 시설에에 **손 세정제,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**하고, 보건용 마스크, 체온계, 자가검사키트 등 **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**

2 학내 시설별 · 상황별 관리

□ **(강의실) 학내 의견수렴**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**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**

□ **(기숙사) 방역 관리자를 지정**하고, **기숙사 세부 방역관리 방안** 수립

○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, **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**

○ **의심환자** 발생 시 가까운 **지정의료기관을 방문**하여 **진료·검사**를 실시하거나 기숙사 내 **구비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**

○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**기숙사 출퇴근 종사자**들에 대한 **방역관리**를 철저히 하고, 입소 인원 외 **외부인 출입 자체**

□ **(교내 식당)** 감염예방을 위한 **식사환경 조성** 및 **급식방역 관리** 내실화

○ 이용 개시 전 **식당 전체 소독을 실시**하고, 대학별·식당별 여건에 맞게 **식사 시 일정거리**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**방안 마련**

○ **식당 관리자는 종사자**들에 대한 **방역관리 계획마련** 등 **관리 철저**

□ **(학교 행사)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***되었지만, 다수가 **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**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**마스크 착용 권고**

*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

<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(중대본) >

○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**코로나19 의심 증상**이 있는 경우

○ **코로나19 고위험군***인 경우 또는 **고위험군과 밀접 접촉**하는 경우

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 호흡기 질환자, 미접종자 등

○ **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**

* 사람이 많을수록,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

○ **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·주관** 시 아래 사항을 준수

<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>

○ **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** 진행하며, 학생 인솔,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**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**

○ 행사 시작 전 **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**

○ 프로그램 활동 외에 **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자제**

○ 마스크 착용, 사람 간 거리두기 등 **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**

Ⅲ 상황 발생 시 관리

1 유증상자 발생 시

□ **(대학)** 대학에 비축된 **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**를 지원하거나, **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**

□ **(학내 구성원)**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**검사**(자가검사*, 의료기관 방문 등) **또는 진료** 실시, **검사 결과 '음성'**이면 등교(출근) 가능하나 **증상**이 **지속**되거나 심해지면 **의료기관 방문 진료· 검사 실시**(권고)

* 자가검사 결과 **'양성'이면 의료기관, 보건소** 등을 방문하여 **추가 검사 실시**

<유증상자 방역수칙>

보건용 마스크(KF80 이상) 상시 착용,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2 확진자 발생 시

□ **(대학)** 확진(본인 또는 동거인)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**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

※ (예시) 학생 : 출석 인정 / 교직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

※ 확진 또는 검사·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, 지정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)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

○ **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**하여 관리

□ **(확진자)**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**격리기간(7일 의무) 및 수칙 준수**

<확진자 방역수칙>

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 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, 사적모임 자제

※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, 동거인(학생 및 교직원)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
('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, 음성시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' 권고)
↳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

※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